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 종피보험자2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	
	종피보험	자1			종피보험자3			
	엘아이지손해보험 (주)		(무)LIG New희망플러스자녀보험					
보장성	202-81-48	3***	20142529***		141018-****	김연서	564,326	
	790125-****** 정은주							
	악사손해보험 (주) (AXA GENERAL INSURANCE CO . , LTD)		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A14111145***				1.056.070	
보장성	114-86-04***				761220-*****	김지훈	1,056,070	
인별합계금액						1,620,396		

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나이요건 제한 있음)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

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3-91-10*	베*****	일반	9,200
3-90-91*	삼*****	일반	77,000
2-08-58*	샘***	일반	2,300
3-90-89*	W ***	일반	35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24,1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24,1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2013년도 사용액계

일반	22,810,534		
전통시장	145,500	인별합계금액	23,626,034
대중교통	670,000		

■ 2014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일반	3,376,068
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8,900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4,386,147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0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171,500
102-81-14***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일반	2,514,389
102-81-14***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전통시장	0
102-81-14***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대중교통	264,75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보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보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작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,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일련번호: 20150510-00976514



NTS 🚼 국세청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2014년도 사용액계

사 업 제	다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	일반			5,382,686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0
	대중교통			228,800
	일반			4,893,918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0
	대중교통			216,350
인별합계금액				10,721,754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보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보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작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,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일련번호: 20150510-00976514

(단위:원)



-4-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2013년도 사용액계

일반	0		
전통시장	0	인별합계금액	0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214-81	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9,000,023
214-81	37***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12,000
	일반			4,031,087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				0
	대중교통			0
일반				4,968,936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0
	대중교통			12,000
인별합계금액				9,012,023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보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보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작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,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2013년도 사용액계

일반	4,527,010		
전통시장	0	인별합계금액	4,527,010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ねつの人ろ	조 글	1월	2월	3월	4월	공제대상금액
현금영수증	종류	5월	6월	7월	8월	공제대상금액 합계
		9월	10월	11월	12월	
		0	8,000	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15,550	23,600	114,590	0	164,240
		0	2,500	0	0	
	일반	47,150				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보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보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작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,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2014년도 사용액계 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현금영수증 종		1월	2월	3월	4월	공제대상금액
	σπ	5월	6월	7월	8월	공제대상금액 합계
		9월	10월	11월	12월	
	일반					117,09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인별합계금역	객					164,24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보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보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작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,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연금저축]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연금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연도 납입금액	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	순납입금액
계좌번호		납입금액	인출금액	
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	104-86-39***	4.080.000	0	4.080.000
0000790	18102***	4,080,000	0	4,080,000
농협은행 주식회사	104-86-39***	120,000	0	120,000
07987	001***	120,000	0	120,000
순납입금액 합계				4,200,000

1. 연금저축(2001.1.1 이후 가입)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

2. 세액공제 대상금액: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
3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지훈	761220-*****	

■ 기부자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계
113-82-05***	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60,000
인별합계금액			60,0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(사업소득자) 본인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(단,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) ※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
- ▶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